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등본입니다.

2016. 4. 1.

법원사무관 길 병



사 건 2015노4775 폭행치상

피 고 인 장경욱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인훈(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46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을 폭행한 바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 10:2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자신이 재임용 되지 않고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유 이 대학교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교부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행동이 집회 개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집기류를 옮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한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성립하는 등의 제한을 요한다. 우리 법원의 판례도 폭행의 개념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대법원 86도 1796 판결) 혹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대법원 89도1406 판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 3회 끌

은 행위'나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덤벼드는 상대방을 부동켜안은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 때 불법한 공격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8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수원대학교 측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원대학교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고, 해직교수들이 집회신고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정문 앞에서 교직원들 다수를 동원하여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방해하였다.

②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은 신고한 대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핑계를 대며 거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③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핸드폰과 손을 잡아채면서 손목을 꺾었다'고 기재하였다. 고소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낚아채서 팔이 꺾이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이 약간 빠졌

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으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고소인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신체부위가 일관되지 않고 폭행부위와 실제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④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쥐거나 팔을 꺾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고소인과 같이 수원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 , 황 은 원심에서 다음과 같이 고소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안 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잡아당겨서 몇 번 뿌리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황 은 '고소인이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뒤쪽에서 낚아채듯이 못 찍게 하면서 그 다음에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고소인을 제지하며 핸드폰을 향하여 손을 뻗는 모습, 고소인이 이를 피하며 팔을 뿌리치는 모습 등 가벼운 실랑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손, 팔을 꺾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다. 실랑이가 있는 후 그로부터 20초가 경과한 뒤 고소인은 "아, 손가락 다친 거 같애.", "지금 내 손 누가 움켜쥐었죠? 저 분이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고 있다. 수원대 해직교수들의 집회를 취재하기 위해 왔다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인터넷매체 뉴데일리의 경제부 기자인 조 는 원심에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

킴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⑥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 및 가벼운 신체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며 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당긴 정도, 고소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뿌리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⑦ 그러나 수원대 교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해직교수들의 집회를 방해하며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고소인의 팔을 당겼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행위의 목적, 행위의 태양, 고소인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신체의 접촉을 두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공격을 하였다거나 이를 형법상으로 처벌가치 있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⑧ 설령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동기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인다.

⑨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고소인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원심에서는 오른쪽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이 빠졌다고 진술한 것에 반하여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으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_____

 판사 이재찬 _____

 판사 황성미 _____